

코로나19로 인한 A.T.A.까르네 재수출 기간 한시적 연장 안내

- 까르네증서는 A.T.A.협약가입국간에 일시물품 수출입 통관편의를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로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 증서를 발급할 수 없고 유효기간 내 재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나,
 -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 운항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「A.T.A.까르네물품의 재수출기간 연장제도」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「A.T.A.까르네물품의 재수출기간 연장제도」는
 - 적절한 재수출 이행관리를 위해 3개월 단위로 일정 조건하에 재수출기간을 연장 조치하는 제도로 적용대상·기한·요건 등은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▶ (적용대상) : A.T.A.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입신고한 물품 중 항공편 운항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수출이행이 곤란한 재수출예정물품
- ▶ (적용기한) : 2020. 5. 11.부터 별도통보 시까지
 - ※ 항공편 운항재개 일정 등 고려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공지
- ▶ (적용요건) : 당초 이행기간에 재수출하려고 하였으나 항공편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한 것을 입증 가능한 경우

예시 : ① 당초 재수출 이행기간에 예약한 항공편 티켓이 취소된 경우
② 목적국 항공편 예약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
③ 목적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이동제한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
④ 재수출대상 A.T.A.까르네를 발급한 보증단체의 확인이 있는 경우 등

- ▶ (연장기간) : 재수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. 다만,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연장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신청 가능*
 - * 최대 연장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.
- ▶ (신청방법) :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등 작성 후 최초 일시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
 - 제출서류 : ① 재수출기간연장신청(승인)서 2부 ② A.T.A.까르네원본 ③ 까르네소지인 신분증 또는 대리인신분증(위임장포함) ④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
 - ※ 유의사항 : CV19관련 재수출기간의 연장만 허용한 것으로, 까르네 물품의 용도(예 : 전시물품) 사용기간을 연장한 것을 아님.

관 세 청